

매립시설 []설치
[]정기
[]사용종료·폐쇄
[]사후관리 정기
검사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(사용종료·폐쇄검사 80일)
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①상호(명칭)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성명(대표자)	④생년월일
	⑤주소지(사무실)	(전화번호:)

⑥업종		⑦승인·허가번호	제 호
⑧승인(허가)내용	매립대상 폐기물		
	매립면적	(㎡)	매립용량 (㎡)
	침출수 처리시설	처리방법	
	기타	처리용량	(㎡/일)
⑨사용개시 예정일		⑩사용종료 예정일	
⑪검사를 받으려는 날			
⑫시설종류	[]관리형 매립시설 []차단형 매립시설		
⑬설치장소(주소)			(전화번호:)
⑭매립면적	(㎡)	매립용량	(㎡)
⑮침출수 처리시설	(㎡/일)	그 밖의 사항	
⑯최종복토 예정면적 (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)			(㎡)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·제2항, 제50조제1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,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([]설치, []정기, []사용종료·폐쇄, []사후관리 정기) 검사를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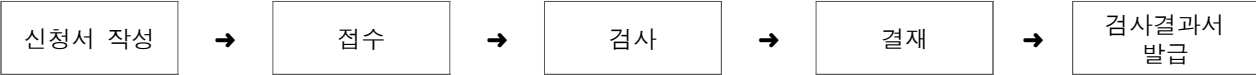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설치·정기 검사의 경우 가.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.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.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.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(면적이 1만㎡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㎡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.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,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마.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(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) 2. 사용종료·폐쇄 검사,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가.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.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. 사후관리계획서(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 라.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(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,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
------	--	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검사기관